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6. 22.(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2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 (2011-36-118)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2011. 6. 3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디지털전환, 정보보호, 콘텐츠 제작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어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11예산 (A)	'12년도 예산안		증감 ('11년대비)		
			지출한도	요구안(B)	B-A	%	
세입(안)	< 합 계 >	8,561	-	11,133	2,572	30.0	
	■ 일반회계	3,116	-	3,171	55	1.8	
	■ 방송통신발전기금	5,445	-	7,962	2,517	46.2	
세출(안)	< 합 계 >	7,669	7,961	8,746	1,077	14.0	
	■ 예산	소 계	3,208	3,047	3,047	△161	△4.3
		(일반회계)	3,050	2,827	2,827	△223	△7.3
		(혁특회계)	158	220	220	62	39.2
	■ 방송통신발전기금 ^{*)} (R&D)	4,461 (1,984)	4,914 (1,992)	5,699 (1,992)	1,238 (8)	27.7 (0.4)	

* 기금 총 운용규모 : 내부거래(200억원), 여유자금운용(2,063억원)을 포함하여 7,962억원

㉡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내용

① 2012년도 세입 예산안 : 총 세입은 11,133억원으로 '11년도 8,561억원 대비 2,572억원(30%) 증가

- 일반회계는 3,171억원으로 '11년도 3,116억원 대비 55억원(1.8%) 증가

- 기금은 7,962억원으로 '11년도 5,445억원 대비 2,517억원(46%) 증가

② 2012년도 세출 예산안 : 총 세출은 총 8,746억원으로 '11년도 7,669억원 대비 1,077억원(14%) 증가

- 일반회계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인프라,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등에 총 2,827억원 편성('11년 3,050억원 대비 7% 감소)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파연구소의 지방이전(서울→나주) 청사 부지매입비, 건물 신축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158→220억원, 62억원 증)
- 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총 5,699억원 편성('11년 4,461억원 대비 27.7% 증가)

2)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등에 관한 건 - (2011-36-119)

- o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1.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에 대한 재할당(안)과 이동통신 3사의 재할당 주파수 등을 활용한 LTE 도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재할당 관련

- **(재할당여부)** 심사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한 SK텔레콤* 등 13개 사업자는 재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기준점수에 미달된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에 대해서는 재할당 하지 아니함

* KT(PCS), LG U+(PCS), SKT(셀룰러), KT파워텔, 파워텔TRS, 티온텔레콤, 에어미디어,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 KT(무궁화위성, 인마세트, 해상이동전화)

- **(일부회수)** 일부회수 의견이 제시된 KT파워텔, 티온텔레콤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 하더라도 향후 가입자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KT파워텔은 14MHz→10MHz(811~816, 856~861MHz), 티온텔레콤은 4MHz→2MHz(816~817, 861~862MHz)로 축소 조정하여 재할당

·회수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무선국 재배치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수시기를 1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되,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11.7월까지 재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회수시기를 결정

- **(재할당 조건)** 신청사업자가 기지국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 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파간섭 발생시 시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

② LTE 도입 승인 관련

-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입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폭증하는 트래픽 해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LTE 도입을 승인하기로 함

3)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 - (2011-36-120)

- o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된 800MHz/1.8GHz/2.1GHz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공고안,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2.1GHz대역 참여제한 관련 사항은 제3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o 주파수 할당공고안 주요내용

① 할당대상 주파수

- 800MHz(10MHz폭), 1.8GHz(20MHz폭) 및 2.1GHz(20MHz폭) 등 3개 대역 총 50MHz폭

②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 할당시기

·800MHz대역 : '12. 7. 1.

·1.8GHz/2.1GHz대역 : '11. 7. 1일 이후 방통위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

- 주파수 이용기간 : 10년

③ 할당방법 및 최저경쟁가격

-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 의해 할당하며, 경매는 동시오펜 입찰 방식으로 진행

- 최저경쟁가격

·800MHz대역(10MHz폭) : 2,610억원

·1.8GHz/2.1GHz대역(각 20MHz폭) : 각 4,455억원

④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 (주파수 용도)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 (기술방식) 3G이상의 국제표준방식

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MHz폭까지만 할당 허용
-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할당
- 2.1GHz대역 참여제한 방안 : 2.1GHz대역을 보유한 SKT 및 KT 참여 배제 (제3안)

⑥ 망구축 의무

-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및 5년 이내 30% 이상(인구기준 약 60%)의 망구축 의무 부여

4) EBS-TV '하나뿐인 지구' 재심에 관한 건 - (2011-36-121)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11. 4. 22)에 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심 청구 ('11. 5. 9) 건에 대하여, 원심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처분대로 '주의'를 명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하나뿐인 지구'('11. 2. 17)에서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과 간 채취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생명의 존중>, <수용수준> 위반으로, "주의" 제재조치 의결

5) 2011년도 지상파·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1-36-12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11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과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대상

- 2011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12개사, 12개 방송국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지상파라디오	(주)경인방송	경인FM
	(주)제주방송	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
	소계 :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공동체라디오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분당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
	소계 :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

②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③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항목	배 점	
	지상파	공동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점	150점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150점
5. 경영의 적정성	50점	150점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250점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
8. 청취자의 권익 보호(청취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평가 포함)	75점	50점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 필요사항	100점	10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1,000점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④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6)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 (2011-36-123)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주)쇼핑원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승인 조건

①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주요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처분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중소기업 등 우대주주의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정관 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구성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중소기업 상품과 관련해서는 정액방송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의 주주(회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한 상품 선정 및 방송편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3월 말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주구성의 적정성·건전성 확보방안
 - 2) 상품소개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 방안
 - 3)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지원 방안
 - 4) 중소기업상품 방송편성비율, 중소기업상품 구성의 다양성, 우수 중소기업상품 발굴, 공정·투명한 상품선정 등 상품 구성 및 확보방안
 - 5)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
 - 6) 방송·콘텐츠 산업 및 유통산업 지원방안
- ⑧ 판매수수료 등 중소기업 지원 및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별도로 당해 연도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⑩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⑪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6. 24(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